새로운 생각 키우기
올바른 마음 가꾸기
튼튼한 체력 기르기

대성 가정 통신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2019 - 15호
전화 : 031-584-0621
FAX : 031-584-9226

꽃샘추위 속에서 따뜻한 봄의 기운이 기다려지는 3월입니다.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보호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는 법률에 따라 3월 20일(수) 예정된 학부모 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학부모위원 4명 중 임기 마친 1명 선출).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자치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이 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체제를 구축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등 안전한 학교를 완성하는 일에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뒷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5일(금)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인원	자 격	비고
학부모위원	4명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명중 2년 임기 마친 1명 선출
교원위원	2명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전문가위원	1명	▸ 우리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계	7명		

※ 위원 정수 이내인 경우에도 가/부 투표가 실시되며, 인원 부족 시 학부모 총회시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별 대표임원 중에서 선출함.

※ 세부사항은 뒷장을 참조해 주세요.

2019.3.11.

대 성 초 등 학 교 장

대성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세부사항

순	구분	내 용	비고
1	자치위원회 심의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본쟁조정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2	자치위원 임기	◦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자치위원회 소집 시기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집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 자치위원회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학년도 대성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청서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학부모총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함)
성명		
자녀이름 (학년반)		
연락처		

본인은 2019년 대성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희망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